

조례안 검토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최영미]

목 차

1	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2	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6
3	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	10

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. 3. 27.

나. 발 의 자: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신미정, 이재운, 신중양, 김향란, 최준규, 김홍섭,
표주숙, 이흥희, 신재화, 박수자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: 2025. 3. 28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, 신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저연차 공무원 대상 안식휴가 신설(제13조)

- 1)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: 3일
- 2)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5일

나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 정비(안 별표 3)

- 1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 : 법령 재 기재로 삭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5. 3. 17. ~ 3. 24.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☐ 조례제정의 필요성: 필요

- 상위법에 따른 정비로 법률 적합성 확보

☐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: 해당없음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
☐ 재정부담 여부(예산조치사항): 해당없음

☐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: 해당없음

☐ 검토결과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(안식휴가)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.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특별휴가) ①~⑤ (생략)	제13조(특별휴가) ①~⑤ (현행과 같음)

⑥ 의장은 <u>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</u> 다음 각 호의 <u>휴가</u>를 허가 할 수 있고,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 <신 설> <신 설> 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20일 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 ⑦ (생략)	⑥ 의장은 <u>공무원에게</u>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<u>안식휴가</u>를 <u>줄</u> 수 있고,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 1.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: 3일 2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5일 3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4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20일 5.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 ⑦ (현행과 같음)
--	--

○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대통령령 제34661호, 2024.7.2.)

□ 주요 개정 내용

구 분	현 행	개 선 안
① 육아시간 확대	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, 24개월간 유급	<u>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</u>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, <u>36개월간 유급</u>
② 가족돌봄 휴가 확대	자녀 돌봄시에만 2일 부여(다자녀(2자녀 이상)는 3일)	자녀 돌봄시에만 2일 부여(<u>다자녀 3일, 셋째 자녀부터는 유급 1일씩 추가</u>)
③ 연가일수 확대	1년~2년 미만: 12일 2년~3년 미만: 14일 3년~4년 미만: 15일	1년~2년 미만: 15일 2년~3년 미만: 15일 3년~4년 미만: 16일
④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	저축연가 소멸시효 10년	소멸시효 폐지
⑤ 형제·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	1일	3일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대통령령 제34661호, 2024.7.2.)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
- 전국의 상당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MZ세대 공무원 등의 퇴직을 막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재산정하고 있는바,
-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~ 중 략 ~

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

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이 항에서 “어린이집등”이라 한다)의 휴업·휴원·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2.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3. 미성년자이거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(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인”이라 한다)인 자녀·손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
4.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
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. 3. 27.

나. 발 의 자: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이재운, 신중양, 신미정, 김향란, 최준규, 김홍섭,
표주숙, 이흥희, 신재화, 박수자, 김혜숙,)

다. 회부일자: 2025. 3. 28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 기구화를 규정하고 있는 「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 규정을 더욱더 명확히 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조항 신설 (안 제2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5. 3. 20. ~ 3. 26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☐ 조례제정의 필요성: 필요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 기구화

☐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: 해당없음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
☐ 재정부담 여부(예산조치사항): 해당없음

☐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: 해당없음

☐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현행	개정안
<u>제2조(구성) 윤리특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	<u>제2조(구성) ① 윤리특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거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</u>

<u>제2조의2(임기 등) 위원회 임기·선임, 위원장 선임·직무, 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은 「거창군의회 기본 조례」 제16조·제20조·제21조·제22조·제23조를 준용한다.</u> <u>제2조의3(기능)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, 욕설, 비방행위,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.</u> <u>② 위원회는 의장이 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 제70조·제82조·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.</u> <u>제9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거창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</u>	<u>라 한다)을 제외한 거창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</u> <u><삭 제></u> <u>제2조의2(기능)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, 욕설, 비방행위,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.</u> <u>② 위원회는 의장이 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 제70조·제82조·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.</u> <u>제9조(준용) 위원회 임기, 위원장 직무, 부위원장,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거창군의회 기본 조례」 제16조·제21조·제22조·제23조 등을 준용한다.</u>
--	---

-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되었으므로 제2조 2항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. 3. 27.

나. 발 의 자: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최준규, 이재운, 신중양, 신미정, 김향란, 김홍섭,
표주숙, 이흥희, 신재화, 박수자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: 2025. 3. 28.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」에 따라 거창군의회 회의록 공개 시기,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, 방청 제한시 그 사유와 근거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(안 제48조제6항)

-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공개

나. 방청 예약 절차 마련(안 제76조)

- 현장, 온라인, 유선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청 신청

다. 용어 순화 및 정비(안 제79조제1항제2호, 제3호)

라.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고지 규정 신설(안 제79의2)

마.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
(안 제92조, 제93조, 9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, 제83조, 제84조, 제97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5. 3. 20. ~ 3. 26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☐ 조례제정의 필요성: 필요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」에 따름

☐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: 해당없음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, 제83조, 제84조, 제97조

☐ 재정부담 여부(예산조치사항): 해당없음

☐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: 해당없음

☐ 검토결과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「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」을 마련해 △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보장 △회의규칙 등 근거 규정 마련을 권고하였음.

○ 또한, 전체 42%에 해당하는 지방의회가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는 점을 지적하고 유선, 온라인 등 다양한 방청 신청 방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하였음.

○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.

구 분	주 요 내 용
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 (안 제48조제6항)	회기가 끝난 날부터 <u>30일 이내에</u> 회의록 공개(신설)
방청의 허가 (안 제76조)	현장 → <u>현장, 온라인, 유선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청 신청</u>
용어 순화 및 정비 (안 제79조제1항 제2호, 제3호)	술에 취한 사람 → <u>술기운이 있는 사람</u> 우려가 있는 자 → <u>우려가 있는 사람</u>
방청 제한 고지 (안 제79의2)	제7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. <u>(신설)</u>
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<u>신설</u> (안 제92조, 제93조, 94조)	제92조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) 제93조(중계 대상 및 기준) 제94조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

○ 본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거창군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.

< 경남 지방의회 의사중계 현황 >

구분	인터넷 생중계	유튜브 생중계	누리집 영상등록
경남도의회	○	○	○
창원시의회	○		○
진주시의회	○		○
통영시의회	○	×	○
사천시의회	×		○
김해시의회	○	×	○
밀양시의회	○		○
거제시의회	○		○
양산시의회	○		○
의령군의회	본회의만	행정사무감사만	○
함안군의회	본회의만	×	○
창녕군의회	○	×	○
고성군의회	×	외주채널	×
남해군의회	×	×	×
하동군의회	×	×	유튜브 등록
산청군의회	○	×	○
함양군의회	○	×	○
거창군의회	○	×	○
합천군의회	○	×	본회의만

참고1

관련 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6조(주민에 대한 정보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, 집행기관의 조직,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(이하 “지방자치정보”라 한다)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84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97조(방청인의 단속)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·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